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2025.10.30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025년도 9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과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최근 통과된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에 관하여 참고하실 만한 외국 사례(3) 및 저희 그룹이 최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9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 (→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오피스텔 공급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기로 하는 ‘책임한정특약’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완성, 일부 변제,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변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례

2. 이슈 소개 –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과 그 함의

- ▶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2025. 7. 22.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개정의 함의(implication)를 분석하는 의미에서, 매월 1차례씩 5회에 걸쳐 해외의 주요 판결례 등을 간략하고 쉽게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소개하여 드릴 내용은, 당초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여, 지난 시간에 소개하여 드린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 제144조 개정의 배경이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판결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1) 미국의 이른바 'MFW 기준'
- (2)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 144의 전면 개정
- (3)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판결
- (4) Unocal 판결과 Blasius 판결
- (5) 기업인수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례와 soft law

3. 최근 수행 승소사례 소개

- ▶ 수분양자들이 해약금 해제조항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1심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계약금 외에 초과 입금분은 잔여 분양대금의 일부이며, 해약금 해제 제한 조항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양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킨 사례
- ▶ 모회사가, 모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자회사 이사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취소되었고, (ii) 그 행사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자회사 이사들을 대리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 전환사채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수인 회사 경영자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을 인정받아 매수인 회사와 그 경영자에게 잔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 다수 관계인이 참가한 합의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수익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흠결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 ▶ 독일헤리티지펀드 판결 - 부실 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판매회사가 금융당국의 분재조정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한 다음,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90% 승소한 사례

관련구성원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

최복기

변호사

02-316-1613

bgchoi@shinkim.com

이숙미

변호사

02-316-4016

smlee@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